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3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의자 : 김기표 · 김승원 · 이연희

김남희 · 한민수 · 권칠승

박지원 · 신영대 · 박수현

맹성규 · 이주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 상에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